

신 탁 계 약 서 전 후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 <신 설></p> <p>3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----- 연계된 것(이하 “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4. 법 제110조에 의하여 -----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</p> <p>5. 환매조건부 매도</p> <p>6.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</p> <p>7. 증권의 차입</p> <p>8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~③ (생 략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양도성 예금증서</p> <p>4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----- 연계된 것(이하 “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5. 법 제110조에 의하여 -----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</p> <p>6. 환매조건부 매도</p> <p>7.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</p> <p>8. 증권의 차입</p> <p>9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~ 2. (생 략) <신 설></p> <p>3.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4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5.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양도성 예금증서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4.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5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6.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

<p>6.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7.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	<p><u>7.</u>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<u>8. 제1호 내지 제3호</u>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
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제18조 제1호 내지 <u>제2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 제3호 내지 제7호</u>, 제19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5. (생 략)</p> <p>③(생 략)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제18조 제1호 내지 <u>제3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<u>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<u>제18조 제4호 내지 제8호</u>, 제19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부 칙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